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04
----------	------

2024년 6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4년 5월 27일  
다. 회부일 : 2024년 5월 30일  
라. 상정일 :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6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 가. 제안이유

- 서울런 4050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인생이모작 지원 대상의 확대 및 시립도심권50플러스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변경하고,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변경함.  
○ [별표 1]의 50플러스센터 관련 내용을 삭제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

※ 향후('24년 하반기) 조례 개정 시 반영 검토 협의완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4. 11. ~ 2024. 5. 1.) 결과: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장년층'(50세 이상 65세미만)을 '중장년층'(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명, 목적, 정의 등을 개정하고, 시립도심권50플러스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별표1의 50플러스센터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 정비 등을 위해(맞춤법, 용어 개선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제출 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u>장년층</u> 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중장년층</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 <u>장년층(長年層)</u> "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 " <u>중장년층</u> "이란 40세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u>장년층</u> 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3. ----- <u>중장년층</u> ----- -----.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장년층</u> 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 <u>중장년층</u> ----- ----- -----.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 6. (생략)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1. 50플러스캠퍼스 :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상담, 교육, 일, 여가·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거점 시설
- 2. 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 교육·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기반 시설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 1. ~ 4. (생략)
- 5.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제4조(지원사업) ① ----- 중장년층 -----

-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  
-----  
-----  
-----  
-----

- 1. ----- 중장년층 -----  
-----  
-----  
-----
- 2. ----- 중장년층 -----  
-----  
-----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  
-----  
-----  
-----

- 1. ~ 4. (현행과 같음)
- 5. 중장년층 -----  
서울특별시 -----  
-----

<p>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p> <p>6. <u>장년층</u>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p>	<p>-----</p> <p>6. <u>중장년층</u>-----</p> <p>-----</p> <p>-----</p>
<p>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u>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9조(위원회의 설치) -----</p> <p>----- <u>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u>-----</p> <p>-----</p>
<p>1. <u>장년층</u>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2. <u>장년층</u>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1. <u>중장년층</u> -----</p> <p>-----</p> <p>2. <u>중장년층</u> -----</p> <p>-----</p>

※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 제명, 목적, 정의 등 개정

- ▶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개정 (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3호, 제3조, 제4조, 제6조의2 제1호 및 제2호, 제6조의4 제5호 및 제6호, 제9조 제1호 및 제2호)

· 대상 연령 개정

- ▶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개정 (안 제2조 제1호)

· 대상 범위 예외 규정 개정

- ▶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를 “중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로 개정 (안 제4조 제2항)

- 위원회명 개정
  -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를 “중장년층 (생략)”으로 개정 (안 제9조 본문)
- 별표 1 개정
  - 도심권50플러스센터 삭제 (별표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
- 용어의 정비
  - 명확한 표현 (제6조의4 제5호, 제8조)
  - 접말 (안 제5조, 제8조)

## 나. 개정안 제명, 목적, 정의의 대상 연령 개정

-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에서 “장년층”으로 규정한 50세 이상 65세 미만 연령을 “중장년층”으로 하여 대상 연령인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서울런 4050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인생이모작 지원 대상의 확대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 통계청에서는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 발표(2023.12.20.)를 통해 청년층(15~39세), 중장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음.

### 〈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주요 현황 〉

(단위: 천명, %)

구분	청년층[15~39세]	중장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
생애단계별 인구 수	14,920	20,204	9,046

- ※ 중장년의 기준 연령은 법률로 정해진바 없으며, 정부부처 중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내일센터는 40세 이상 중장년 재직자·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중장년 대상을 만40세부터 64세까지로하여 지원하고 있음.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제5호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관련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노인 기준 연령을 유추가능함.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1~4. (생략)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 개정안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수정하는 조문(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3호, 제3조, 제4조, 제6조의2 제1호 및 제2호, 제6조의4 제5호 및 제6호, 제9조 제1호 및 제2호)

○ 다만, 조례의 목적, 정의, 대상 연령을 전부 수정한다는 것은, 조례가 제정된 본질적인 이유와 의미를 수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목적과 의미를 저해하지 않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와 50+재단의 인력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장년층(50~64세)에서 중장년층(40~64세)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에서 정하는 특정 대상을 위한 정책 효과가 낮아질 수 있는 등, ‘장년층’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정책 수립을 변경하여 초래되는 영향에 대해 세밀한 검토 후 개정이 추진된 것인지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현행 조례의 서울특별시의회를 통해 제정안 의결(2015.03.12.) 당시 제안요지를 살펴보면, ‘장년층(長年層)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교육, 취업 훈련·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 및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위원회 등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년층 지원정책의 추진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사업 시행 후 조례 개정

- 평생교육국에서 2022년 12월 30일 발표한 ‘전환기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 4050 추진계획’은 장년(50~64세)을 위한 정책에서 40대를 포함한 중장년(40~64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지원과 재교육 훈련 강화 등 인생 이모작 준비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출발했으며,
  - 평생교육국과 50플러스재단(이하 ‘50+재단’)은 ‘서울런 4050’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중장년 정책 수행을 위해 40대는 재창업 및 창업, 직업 유지 등을 지원하고, 50대에는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일·생활 균형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50+재단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50+재단 조례」)에 근거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며, 현행 조례에 따라 중장년 일자리 지원, 창업 지원을 포함한 ‘서울런 4050’ 사업을 수행 중이며, 40세 이상 69세 이하를 대상으로 15개 사업(2024년 5월 31일 기준)을 추진 중임.

### 〈 50+재단 사업별 대상자 연령 및 참여 내역 〉

연번	사업명	대상자 연령	목표	참여인원
1	중장년 인턴십	40~64세	450명	104명
2	중장년 채용설명회	40~64세	2,000명	719명
3	중장년 이직지원	40~59세	100명	66명
4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40~64세	3,000명	7월 추진 예정
5	중장년 취업 컨설팅	40~64세	1,420명	1,012명
6	중장년 경력설계 상담	40~64세	11,000건	5,354건
7	중장년 일자리 연계 직무훈련	40~64세	1,300명	368명
8	중장년 디지털 직무역량 개발 프로그램	40~64세	2,400명	1,000명
9	중장년 창업보육공간 지원	40~64세	85%연평균 입주율	82.5%
10	중장년 창업 컨설팅	40~64세	130건	7월 추진 예정
11	40대 특화 직업전환지원 협력체계 운영	40~49세	2,060건	2,732건
12	40대 특화 직업전환 프로그램	40~49세	3,920건	1,387건
13	40대 직업캠프 운영	40~49세	60명	참여자 모집 중
14	(보조금)중장년 경력전환 컨설턴트	40~64세	45명	45명
15	(보조금)중장년 사회공헌(보람일자리) 운영	40~67세	3,523명	3,302명

출처: 50+재단(2024.05.31. 기준)



〈 서울특별시 중장년 정책 비전과 추진방향 〉

**비전** 중장년이 **활력있고 행복한 도시, 서울**

**목표** 일자리와 역량은 **높이고** ↑ 미래걱정은 **줄이고** ↓  
 중·장년의 **학습-일-여가-생활 선순환** 지원체계 강화

**전략** **연령대별 욕구 맞춤**  
 직업역량 강화 + 일자리 지원 + 디지털역량 강화 + 생애설계 노후준비

**방향**  
 ◆ 40+ 재취업과 창업을 통한 직업 유지 및 업그레이드  
 ◆ 50+ 디지털 격차 해소, 일생활 균형을 통한 건강하고 보람찬 사회활동

**추진 과제 (48개)** **중장년 사회·경제 활동 기회 확대 및 노후준비 강화**

<b>1. 직업역량 강화 (7개)</b> '미네르바형' 직업전환 지원체계 구축 / 미래변화 적응을 위한 맞춤교육 등	<b>2. 일자리 지원 (19개)</b> 재취업(이직, 전직) 지원 / 창업·창직,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b>3. 디지털역량 강화 (8개)</b>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배움터) / 디지털 <b>동행</b> 플라자 조성 등	<b>4. 생애설계 노후준비 (12개)</b> 인생설계학교 운영 / 중장년 맞춤형 법률·경제교실 등

**5. 인프라 조성(2개)**  
 중장년 “활력+ 행복타운” 조성, “서울런 4050” 구축

출처: 평생교육국(전환기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 4050 추진계획)

-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 사항으로, “서울린 4050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의 근거 없이 장년층 대상인 50+재단 사업범위를 40대인 중년층까지 확대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고,
  - 50+재단은 ‘서울린 4050’을 포함한 전체 사업 대상을 조례의 개정 없이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근거 없는 사업의 추진은 사업 안정성 하락과 사업 대상에 대한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출 시기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 한편, ‘서울린 4050’ 계획 수립은 2022년 12월에 추진한 사항이며,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후 제322회, 제323회 등 두 번의 임시회가 있었음에도, 제324회 정례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필요한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 2023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 감사결과 처리의견 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서울시50플러스재단)
  - 서울린 4050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 근거 없이 장년층 대상인 50+재단 사업범위를 40대인 중년층까지 확대시켰음.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함.

출처 : 2023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라. 대상범위 지원 예외 수정 (안 제4조 제2항)**

- 안 제4조 제2항은 ‘중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교육 지원사업,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등 필요한 경우 장년층 이외의 연령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p>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u>장년층</u>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②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u>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u></p>	<p>제4조(지원사업) ① ----- <u>중장년층</u>-----</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p> <p>----- <u>중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u> -----.</p>

- 다만, 안 제4조 제2항은 현행 조례 제4조(지원사업)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 연령을 예외로 하여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장년이 아닌 사람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로 수정하면서, 인생이모작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에 관계 없이 모든 연령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광범위한 사업 범위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여건과 상황을 고려할 때 65세를 초과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조례에서 확정하는 지원 대상의 연령에 관계 없이 인생이모작을 위해 모든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조례의 필요성과 조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저해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예외적인 지원 대상의 확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는 없는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도심권50플러스센터 삭제 (개정안 별표1)**

- 안 별표1은 ‘시립도심권50플러스센터’의 운영 종료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별표1 중 ‘도심권50플러스센터’란(欄, 구분된 지면)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별표 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2길7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2길7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도봉구 마들로 13길84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도봉구 마들로 13길84
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 시립도심권50플러스센터는 2014년 7월에 개관하여 2022년 11월 29일 운영을 종료(민간위탁 종료) 했으나, 운영 종료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본 조례 별표1의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 시민이 조례에 규정된 시설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인생이모작지원시설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실제 운영이 종료되는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개정을 통해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바. 용어의 정비

### 1) 명확한 표현 및 접말 (제6조의4 제5호, 제8조)

- 안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제5호는 ‘시가’를 ‘서울특별시’로 개정하고, 안 제8조(자치구에 대한 지원)는 ‘범위 내’를 ‘범위’로 개정하며, ‘지원 할’을 ‘지원할’로 개정하는 등 의미상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생 략) 1. ~ 4. (생 략) 5.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중장년층----- <u>서울특별시가</u> ----- ----- -----
제8조(자치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자치구에 대한 지원) ----- ----- ----- <u>범위</u> ----- ----- <u>지원할</u> -----.

- 명확한 표현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조례 용어의 정비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조례 개정 시 용어의 정비가 반복되는바, 본 개정안을 포함한 타 조례 제·개정시 명확한 표현과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04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2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서울린 4050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인생이모작 지원 대상의 확대 및 시립도심권50플러스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변경하고,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변경함
- 나. [별표 1]의 50플러스센터 관련 내용을 삭제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
  - ※ 향후('24년 하반기) 조례 개정 시 반영 검토 협의완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4. 4. 11. ~ 2024. 5. 1.)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허준오 (☎2133-3963)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를 ““중장년층”이란 40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한다.

제3조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년층 이외로 할”을 “중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

함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의2 제1호 및 제2호 중 “장년층”을 각각 “중장년층”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제5호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시가”를 “서울특별  
시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장년층”을 “중장년층”으로 한다.

제8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장년층”을 각각 “중장년층”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2길7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도봉구 마들로 13길84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u>장년층</u>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장년층(長年層)</u>"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p> <p>2. (생 략)</p> <p>3. "<u>인생이모작 지원시설</u>"이란 <u>장년층</u>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u>시장</u>"이라 한다)은 <u>장년층</u>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                  -- <u>중장년층</u>-----                  -----                  ----.</p> <p>제2조(정의) -----                  -----                  ----.</p> <p>1. "<u>중장년층</u>"이란 40세 -----                  -----                  --.</p> <p>2. (현행과 같음)</p> <p>3. -----  <u>중장년층</u>-----                  -----                  -----.</p> <p>제3조(시장의 책무) -----                  ----- <u>중장년층</u>-----                  -----                  -----.</p>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구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1. 50플러스캠퍼스 :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상담, 교육, 일, 여가·문화 등을 중

제4조(지원사업) ① ----- 중장년층-----

1. ~ 6. (현행과 같음)

② ----- 중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

제5조(재정지원 등) ① ----- 범위-----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

1. ----- 중장년층-----

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거점 시설

2. 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 교육·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기반 시설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1. ~ 4. (생략)

5.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6.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7. (생략)

제8조(자치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

-----  
--

2. ----- 중장년층 -----  
-----  
-----  
-----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중장년층 -----  
----- 서울특별시 -----  
-----  
-----  
-----

6. 중장년층 -----  
-----  
-----  
-----

7. (현행과 같음)

제8조(자치구에 대한 지원) ----  
-----  
-----

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4. (생략)

[별표 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설명	명칭	소재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2길7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도봉구 마들로 13길 84
50플러스센터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 범위-----  
----- 지원할 -----  
----

제9조(위원회의 설치) -----  
-----  
---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1. 중장년층 -----  
-----
2. 중장년층 -----  
-----
3. 4. (현행과 같음)

[별표 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설명	명칭	소재지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2길7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도봉구 마들로 13길 84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기존 법규 및 예산으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 허준오 (02-2133-3963)